

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개모집 재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9. 12. 4.

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본 재공고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.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근무 부서	임용예정분야	임용예정직급	임용인원	주요 업무
의회 사무처 전문위원	제주 4.3사건 정책 지원	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(주35시간)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4.3 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 지원4.3 배·보상, 유해발굴감식단 설치,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의회차원에서의 4.3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4.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제도 발굴그 외 도의회 「4.3특별위원회」 업무 지원 등

2. 임용(근무)기간

○ 임용일로부터 1년 ※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

3. 응시자격요건

1. 공통(필수)요건(적용기준일 :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및 기타법령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)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지역 및 성별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응시연령: 20세 이상인 자(2000.12.31. 이전 출생자)

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 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2. 응시자격요건(경력)

임용예정 분야	임용예정 직급	임용자격 기준
제주 4.3사건 정책 지원	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(주35시간)	<p>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경 령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관련 자격: 해당사항 없음</p> <p>▶ 실무경력 인정 범위: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제주 4·3사건 관련 업무 경력</p> <p>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</p>

※ <경력>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-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
- ※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(예시: 주 20시간 근무)

4. 보수수준

○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결정

구 분	상한액(천원)	하한액(천원)
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(6급 상당)	64,385	42,902

- *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.
- * 연봉 외 수당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
- *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*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이나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(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)

5. 응시원서 접수

1. 접수기간: 2019. 12. 17.(화) ~ 12. 23.(월) 18:00까지

2. 접수장소: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총무팀(의원회관 2층)

※ 주소: 우편번호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(연동)

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총무팀

3.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○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(09:00~18:00, 중식시간 12:00~13:00 제외)에만 접수 가능함

○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(12월 23일) 18:00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하며, 응시수수료를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 또는 우체국의 통상환증서(해당금액 상당)로 동봉해야 함

-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(064-741-2212)로 접수여부 확인 및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.

○ 접수 전에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

※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,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

6. 제출서류

구 분	내 용	비고
1.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	○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표	필수
2. 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제1호)	○ 응시 수수료 :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첨부 (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0,000원, 나급 7,000원) -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(민원접수창구) 전자인증기 사용 단, 등기우편 접수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지 상당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동봉 ※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(금융기관 판매)는 불인정	필수
3. 이력서 1부 (별지서식 제2호)	○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○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	필수
4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제3호)	○ A4용지 2매 이내 - 성장과정, 가족사항,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	필수
5.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제4호)	○ A4용지 (가급적 3매 이내, 제한없음) -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, 수단, 방법, 추진일정 등을 기술	필수
6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의 의견서(별지서식 제5호)	○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(경력) 요건 기재	필수
7.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각1부(별지서식 제6호)	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서명필수) 1부 ○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서명필수) 1부	필수
8. 최종 학력증명서 -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	○ 전공분야 표시 ※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	해당자만 제출
9. 경력(재직) 증명서 각 1부(별지서식 제7호)	○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(직인)이 날인된 원본 제출 -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○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(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, 직위(급)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필요) ○ 발급 확인자의 직, 성명 날인 및 연락처 포함 - 연락처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	필수
10.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.	○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-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발급 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	필수

구 분	내 용	비고
11. 주민등록초본 1부	○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, 주소이력 포함 -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	필수
12. 기타 증빙자료 각1부	○ 정보화(워드, 킴할 등) 자격증, 외국어 어학능력증명 시본 각 1부. ○ 훈장포장 및 장관이상 정부표창 사본(직무와 관련된 표창에 한함)	해당자만 제출
13.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	○ 임용분야 관련학과의 명칭이 응시자가 졸업한 학교의 학과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	해당자만 제출

✓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
 ✓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.
 ✓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.

7. 시험일시 및 장소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- 서류전형 합격자 결과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
 - 제주특별자치도의회홈페이지(www.council.jeju.kr)의 시험 및 채용정보란에 게시

8. 시험방법

- 1차 시험: 서류전형
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
 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
- 2차 시험: 면접시험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)
 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
 -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※ 5대 평정요소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 -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9. 응시자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(서류전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.
- 당초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(www.council.jeju.kr)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붙임하고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.

- 이 시험시행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,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, 및 「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 등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총무팀 (☎064-741-22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